

## 6. 國土利用計劃變更 關聯權限의 市長·郡守 再委任

資料提供 : 建設部

건설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부응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토지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위임된 국토이용계획입안권, 국토이용 계획결정권, 공공시설입지승인권 일부를 지난 8.13시장·군수에게 재위임 승인한데 이어 '92.12. 추가로 재위임 승인하였다.

### [재위임승인내용]

#### 〈입안권〉

강원도 : 중소기업창업입지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

경상남도 : 면적 30만㎡미만인 용도지역변경(중소기업창업입지,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을 위한 경우는 면적제한 없음)

경상북도 :

충청북도 : 면적 30만㎡미만인 용도지역 변경

#### 〈결정권〉

강원도 : 면적 5천㎡미만인 개발촉진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(중소기업창업입지 지정을 위한 경우는 면적제한 없음)

경상남도 : 중소기업창업입지,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변경

경상북도 : 면적 1만㎡미만인 용도지역변경(중소기업창업입지,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등을 위한 경우는 면적제한 없음)

※ 종전 5천㎡미만

충청북도 : 면적 3만3천㎡미만인 용도지역변경(도시지역과 유보지역 제외)

**<공공시설입지승인권>**

경상북도 : 2만m<sup>2</sup> 미만인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 입지승인

(종전 1만m<sup>2</sup>)

※ 여타 도는 5천 m<sup>2</sup> - 3만3천 m<sup>2</sup>의 범위안에서 기위임

**주택건설 2백만호 앞당겨진 내집마련**